

##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

### 1.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 취득

#### □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 취득 기준

- 1) 대학의 학부(전공)와 교육대학원에 지원하는 전공이 동일한 자로서,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 및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
- 2) 자격증 취득 요건(이수영역 및 이수학점)

구분	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	
전공과목	○ 50학점 이상	
	기본이수과목	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 [교사자격증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참고]
	교과교육영역	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 [교과교육론,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, 교과논리및논술]
교직과목	○ 22학점 이상	
	교직이론	12학점(6과목) 이상 포함 [교육학개론, 교육철학 및 교육사, 교육과정, 교육평가,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, 교육심리, 교육사회,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, 생활지도 및 상담,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]
	교직소양	6학점(3과목) 이상 포함 [특수교육학개론, 교직실무,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]
	교육실습	4학점 이상 [학교현장실습(2학점, 4주 이상)] [교육봉사활동(2학점, 60시간 이상)]
성적기준	○ 전공과목 평균성적: 75점 이상 ○ 교직과목 평균성적: 80점 이상 ※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	
기 타	○ 교직 적성·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이수 ○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	

#### □ 교원자격 무시험검정

- 1)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.

### 2. 전문상담교사(1급) 자격증 취득

#### □ 전문상담교사(1급) 자격증 취득 기준

- 1) 2급 이상의 유치원, 초·중등학교,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, 영양, 보건, 전문상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,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(단,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「유아교육법」에 의한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)로서,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 및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
- 2) 자격증 취득 요건(이수영역 및 이수학점) : 18학점 이상  
[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[별표 4]에 의한 학점 이수]

구분	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	학점	이수학점
공통필수	○ 심리검사 ○ 성격심리 ○ 집단상담 ○ 가족상담 ○ 진로상담 ○ 상담의 이론과 실제 ○ 특수아상담 ○ 발달심리	2학점	14학점 이상 (7과목 이상)
	○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	-	(학점없음)
전공선택	○ 아동발달 ○ 학습심리 ○ 행동수정 ○ 생활지도연구 ○ 이상심리 ○ 청년발달 ○ 영재아상담 ○ 학습부진아 ○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의 이해 ○ 학교심리 ○ 적응심리 ○ 사이버상담 ○ 성상담 ○ 학습상담 ○ 인지심리	2학점	4학점 이상 (2과목 이상)

구분	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	학점	이수학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리학개론</li> <li>○ 사회심리</li> <li>○ 생리(생물)심리</li> <li>○ 인간관계론</li> <li>○ 특수교육학개론</li> <li>○ 학교부적응상담</li> </ul>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직 적성·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이수</li> <li>○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</li> </ul>	-	
※ 「상담실습 및 사례연구」는 학점(교과목)을 이수하지 아니하나, 2종 이상의 사례연구·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			

**□ 교원자격 무시협검정**

-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·도교육감에게 무시협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·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(1급) 자격증을 발급한다.

**□ 참고사항**

- 교육경력의 범위 :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8조 참조(기간제 교사 가능, 종일제 강사 인정 불가)

### 3. 부전공(중등학교 정교사 2급) 자격 취득

**□ 부전공 자격 취득**

- 1)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 및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
- 2) 자격증 취득 요건(이수영역 및 이수학점)

구분	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	
전공과목	○ 30학점 이상	
	기본이수과목	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 [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참고]
	교과교육영역	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 [교과교육론,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, 교과논리및논술]
교직과목	○ 면제[교직이론, 교직소양, 교육실습 영역 전체]	
성적기준	○ 전공과목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 ※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직 적성·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이수</li> <li>○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</li> </ul>	

**□ 교원자격 무시협검정**

- 1)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협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협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.

**□ 참고사항**

- 1)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협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 이어야 하며,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
- 2) 초등, 보건, 유치원, 사서, 전문상담, 실기교사,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 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취득이 불가함